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,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2호 중 “5년”을 “4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)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 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 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.	제36조(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소방경, 소방위, 소방장, 소방 교 및 소방사: <u>5년</u> 이상	2. ----- ----- <u>4년</u> 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